

기관단체 소식

■ 제11회 영양사료기술세미나 개최 - 12월 17일, 18일 충청남도청 대강당 -



(한인규 회장)

영양사료연구회(회장 한인규)는 한국사료협회, 미국대두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7~18일 양일간 충청남도청 대강당에서 제11회 영양사료기술세미나를 연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제일화학공업사가 후원한 이번 기술세미나는 17일(월) 각시군 축산지도직 및 행정직, 기술직 공무원, 축협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18일(화)에는 사료제조업 및 동물약품업체 기술자들이 참석하여 그 열기가 높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인규박사의 부존자원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부존자원활용 방법(권항기), 젓소의 사양체계(맹원재), 한국소와 고깃소의 사양체계(정근기), 닭의 사양체계(안병홍), 돼지의 사양체계(이택원), Prestarter의 제조기술과 급여(한인규), 양계사료의 섬유질함량과 소금요구량 및 연변문제(이봉덕), 전

지대두 및 대두박의 사료적 가치(최진호) 등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축산관련업계에서 공무원, 축협, 기업의 축산기술자, 축산관련인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큰 성황을 이루었다.



■ 박신호(한국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

12월 15일 도입유우 검수차 1개월 예정으로 미국, 캐나다로 향할

■ 축협사료공장 독립채산제로

축협중앙회(회장 이득룡)는 올해부터 인천, 부산, 군산, 나주, 청주 등 5개 사료공장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사료원료에의 보리사용 등 원가상승요인을 경영합리화로 해소하는 한편 사료의 질적 개선을 위한 것이다.

■ 한국사료협회장에 마영호씨

- 12월 21일 정기총회서 새 임원 선출 -



(마영호 회장)

한국사료협회는 지난 12월 21일 회원사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사료회관 5층 회의실에서 84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84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심의와 85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며, 곧이어 임원선출에 들어간 결과 신임 회장에 마영호씨(보거사료 대표)가 선출되었다.

또 비상근 부회장에 정인범씨와 강성배씨가 새로 선임되었으며, 전용진 상근부회장과 권배전무는 유임되었다.

한편 전임 정태원회장은 만장일치로 명예회장에 추대되었다.

- 회 장 : 마영호 (보거사료)
- 부회장 : 전용진 (상근)
정인범 (비상근) · 강성배 (비상근)
- 이 사 : 최병덕 · 민중기 · 강태현 · 손영희
김재수 · 이철용 · 한호섭 · 오관영



△ '84 사료협회 정기총회

김상태 · 김상하 · 장세호 · 임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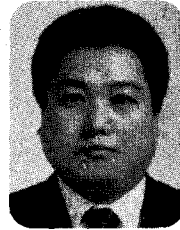
김용태 · 최성강

• 감 사 : 신덕균 · 이원복

■ 한국축산경영학회 창립

- 초대회장에 유제창교수,

12월 14일 창립 총회 개최 -



(유제창 회장)

한국축산경영학회 창립총회가 지설하 축산국장 등 정부관계관, 최병규 건국대 축산대학장 등 학계인사, 양축가 및 업계 관련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해 12월 14일 건국대 학생회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축산경영 및 축산정책 이론연구, 축산경영의 실태 조사분석, 축산경영의 합리화방안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을 통한 한국축산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축산경영학회의 이번 창립총회는 창립준비위원장 인사, 건국대총장 축사, 특별강연, 총회 본회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강연사로 나선 지설하 농수산부축산국장은 「한국축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우리 축산업계가 선결해야 할 문제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설하국장은 또 유통체제 확립을 위한 유통예고제의 정착 및 수매비축시설의 확충,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개발과 사료절감방안 강구, 가축개량사업의 강화, 가축위생의 근대화 등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앞으로의 축산경영학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제창(건국대)교수는 「우리나라 축산 발전과 한국축산경영학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는 우리나라 축산발전의 3대 필수요소를 축산기술, 축산경영, 축산정책으로 제시하고, 축산경영학회의 역할은 이 3대요소중 축산경영적 요소 및 축산정책적 요소에 대한 이론연구와 축산경영실태분석을 통한 축산경영합리화 방안과 정책 방향의 제시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속행된 총회 본회의에서는 경과보고에 이어 창립준비위원장인 유제창교수를 임시의장으로 추대,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회칙 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계속해서 임원선출을 위해 학계, 기관, 업계대표로 하는 전형위원을 구성, 유제창교수(경제학박사, 건국대 축산경영학과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유제창(건국 축산경영학과교수)
- 부회장 : 조용희(영남대 축산경영학과교수)
하서현(강원대 축산학과교수)
- 감 사 : 강희구(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
김병호(농경연 국제농업실장)
- 간 사 : 김순갑(축협 총무부장)
권오욱(영남대 축산경영학과교수)

(고 문)

윤희섭(전 건국대 축산대학장)

이득룡(축협중앙회장)

이인혁(제일중축 대표)

■ 양돈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회 개최

- 12월 14일 사료협회 회의실에서 -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7시 동회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사료협회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정부관계자, 양돈협회 임원, 학계, 업계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자축연을 가졌다.

이날 자축연에서는 전동용회장의 인사말과 시설축산국장의 축사에 이어 수도요리학원 하숙정원장과 미국대두협회 이경원박사에게 각각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양돈협회는 지난 74년 불과 70여명의 소규모 양돈인들이 모여 협회를 창립한 이래 현재 전국에 60여개의 지부를 갖고 있어 40만 양돈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수도요리학원에서 만든 20여종의 돼지고기 요리가 소개되었다.

■ 미국사료곡물협회

USFGC는 한국지부의 기구확장에 따라 85년 1월 1일을 기해 한국지부 지부장을 한국지부회장으로, 지부 차장을 지부 전무로 한국어 직명을 변경했다.

■ 사료곡물 절감 추진대책 협의회

- 농수산부, 사협 4 층 회의실에서 -

농수산부 사료과에서는 지난 12월 10일 한국 사료협회 회의실에서 생산자 단체와 사료공장, 관계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료곡물 절감 추진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지설하국장(농수산부 축산국)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사료곡물의 97.4%인 300여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여기에 필요한 외화만도 5억 8천 8백만불이 소요되어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사료곡물 절감만이 국내 경기에 커다란 힘이 된다고 진제하고, 국내 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료의 제조, 수송, 급여 등에서 허실을 방지하여 사료곡물 도입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사료를 사용하는 생산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단체별, 사료공장별로 사료 절감 대책안을 전달하고 85년도부터 매 분기별로 시행 보고토록 했다.

■ 농수산물 유통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 농수산부, 연내 쇠고기 연동가격제 실시 -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은 지난 12월 20일 본부대 회의실에서 농어민대표 13명과 소비자 3명이 참석한 「농수산부장관과 농어민의 대화」에서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연내에 農水畜産物 유통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쇠고기값도 돼지고기값과 마찬가지로 連動價格制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농수산물가격안정을 위해서 새해에도 생산자단체인 農水畜協과 농개공, 학계 및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농수축산물유통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2월 개장되면 농수산부와 산하단체의 기구도 유통시설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장관은 현재 정육점이 자율신고토록 되어 있는 쇠고기소비자 가격을 올부터 도매시장 지육경락가격(5일간 평균가격)이 3% 이상 등락할 때마다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쇠고기 가격 연동제로 바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축수산신보사(대표 한남석)

1월 8일 제 4 회 신년교례회를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에서 한국낙농경영연구회(회장 김의수)의 후원으로 농수산부, 축협, 농수축산 관계인 및 생산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항생물질제제 검정수수료 인상

농수산부 고시 제 84-53호로 85. 1. 1부터 각종 항생물질 제제(사료첨가제 포함)의 국가검정 수수료 13,000원을 14,000원으로 인상하였다.

■ 축협은 지방쇠고기 서울반입 가능

농수산부고시 제 3065호(79. 5. 11)로 고시한 지방우육 서울반입에 관한 고시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

1985년 1월 5일

농수산부장관

〈지방우육서울반입에 관한 고시중 개정〉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항 축협 및 농협이외는 지방의 냉동우육 및 가공처리한 우부분육을 서울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냉장(주)의 경우는 소값 안정용으로 지방도매시장 및 지방우육 서울반입지정 도축장에서 도축 수매한 지방우육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서울에 반입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 11580호(84. 12. 31)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농수산물유통의 원활화와 적정가격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주요 골자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동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농수산물수탁판매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유통이 근대화되도록 지원함(령 제38조 제18호).

현재 도계장은 도계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도계장은 앞으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정부는 축산물가공품의 관리업무를 농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바꾸고 수육가공품, 유가공품, 난(卵)가공품을 축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법의 시행은 7월 1일부터이다(공포 84. 12. 31) (주요 내용 발췌)

◎ 법률 제3763호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항(목적) 이 법은 수축의 도살·해체 및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과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제 2 호중 “수육, 유, 수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난가공품”을 “수육 및 원유”로 한다.

제 2 조제 3 호중 “수축의 정육”을 “수축의 지육 정육”으로 한다.

제 2 조제 12 호중 “작업장”을 “도축장 또는 집유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동호를 제 8 호로 한다.

제 3 조제 1 항본문중 “유의 처리, 수육·유 및 난의 가공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유처리장·집유장 또는 축산물가공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를 “집유는 이 법에 의한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축산물의 처리방법 등) 수축의 도살·해체 및 집유의 방법과 축산물의 위생등급 및 그 기준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축의 경우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2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축산물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의 제목중 “불량품”을 “미검사품”으로 하고, 동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 2 항중 “식육판매업자·식육운반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를 “식품제조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운반업자·식품접객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경영자”로 한다.

① 식품제조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운반업

● 기관·단체소식

자·식품집객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경영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저장·운반·판매·진열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배합사료 종류 지정고시

농수산부는 사료관리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 에 의한 배합사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84. 12. 22)

가. 양축용 배합사료

구분 : 일반배합사료(49종)

축종별	배합 사료명	범 위
양계용 (18종)	어린병아리	
	-산란계용	6 주 이하
	-육용계용	4 주 이하
	중병아리	
	-산란계용	7 주~12 주
	-육용계용	5 주~10 주
	큰병아리	
	-산란계용	13 주~산란개시전
	-육용계용	11 주~산란개시전
	산란초기	산란개시후~25 주
	-백색계	
	-유색계	
	산란중기	26 주~40 주
	-백색계	
-유색계		
산란말기	41 주 이상	
-백색계		
-유색계		
육계전기	4 주 이하	
육계후기 I	5 주~출하 8 일전	
육계후기 II	출하 7 일전~출하전	
중 계		
-산란계		
-육용계		
특수사료		

축종별	배합 사료명	범 위
양돈용 (11종)	갓난돼지	4 주 이하
	젓먹이돼지	4 주~6 주
	젓뎀돼지	6 주~8 주
	육성돈	2 개월~4 개월
	비육돈전기	초기용
	비육돈후기	완성용
	임신돈	임신기간중
	포유돈	임신말기~이유시
	후보종돈	체중 80kg~종부시
	종 돈	
	특수사료	
낙농용 (11종)	어린송아지	2 개월 이내
	중송아지	3 개월 이후
	큰송아지	4 개월~10 개월
	육성우	11 개월~초임전
	초임우	임신후~분만전
	착유 I	비유량 15kg 이하
	착유 II	비유량 17kg 이하
	착유 III	비유량 19kg 이하
	착유 IV	비유량 21kg 이상
	착유우농축	
	특수사료	
육우비 (9종)	육 우	
	육용	
	-어린송아지	2 개월 이내
	-중송아지	3 개월 이후
	-번식우	7 개월 이후의 번식우
	비육우	
	-육성비육	이유~220kg
	-큰소비육 I	220kg~300kg
	-큰소비육 II	300kg~출하시
종모우		
특수사료		
대용유 (5종)	젓소용 대용유	
	돼지용 대용유	
	대용 탈지분유	
	대용 유장분말	
	유정 대용품	

나. 양어용 배합사료 : 축양용

다. 기타 동물용 배합사료 : 애완견, 애완용 조류, 실험동물